

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

심 사 보 고

2003. 3. 19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3년 3월 5일

○ 회부일자 : 2003년 3월 5일

다. 상정일자 :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2003. 3. 17 :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권 기 수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 제2항 제6호의 규정과 행정자치부 「2003년 공유재산관리지침(2003. 2. 12)」에 따라
-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 등 개별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·출연한 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
- 2001. 4. 28이후 취득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나. 심의사항

○ 청주의료원 — 3건, 121.20㎡

- 간호사 기숙사 증축 경량철골조 78.0㎡ (27,950천원)
- 영안실 매점 증축 경량철골조 25.2㎡ (12,499천원)
- 영안실 분상객실 증축 콘테이너 18.0㎡ (4,774천원)

○ 충주의료원 — 2건, 598.33㎡

- 가동(3층) 회의실 증축 경량철골조 205.39㎡ (82,534천원)
- 가동(2층) 입원실 증축 철골콘크리트 392.94㎡ (244,141천원)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)

○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을 검토한 바

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법인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고자,

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,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,

그동안 의료원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공유재산을 당해 의료원의 재산처럼 사용하면서 회계처리 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타도의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되어,

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의 개정(대통령령 제16983호, 2000.10.20)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186회 임시회에서 지방공사의료원 사용 공유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토록 동의한바 있어,

그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다만, 공유재산의 증축 준공 후

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무상사용 동의를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

2001. 6. 28(청주의료원) 및 2002. 9. 6(충주의료원) 증축 후 지금에 와서 무상사용 동의를 구하려는 사유와

청주의료원의 무상사용동의 건물(영안실 매점 및 문상객실)의 종류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건축물관리대장과 무상사용동의안의 건축물 용도가 상이한 바 건축물관리대장을 현행과 같게 정리할 것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

지방공사의료원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(안)

의안
번호

79

제출년월일 : 2003. 3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 제2항 제6호의 규정과 행정자치부 「2003년 공유재산관리지침(2003. 2. 12)」에 따라
-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 등 개별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·출연한 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
- 2001. 4. 28이후 취득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심의사항

- 청주의료원 — 3건, 121.20㎡
 - 간호사 기숙사 증축 경량철골조 78.0㎡ (27,950천원)
 - 영안실 매점 증축 경량철골조 25.2㎡ (12,499천원)
 - 영안실 문상객실 증축 콘테이너 18.0㎡ (4,774천원)
- 충주의료원 — 2건, 598.33㎡
 - 가동(3층) 회의실 증축 경량철골조 205.39㎡ (82,534천원)
 - 가동(2층) 입원실 증축 철골콘크리트 392.94㎡ (244,141천원)

3. 무상사용 계산 현황

가. 기 허가재산 현황(2003. 2월말)

(단위 : m², 천원)

기 관 명	재 산 현 황			비 고
	건수	면적	재산평가액	
계	31건	75,898.83	26,432,872	
청주의료원	16건	51,133.45	19,097,102	
토 지	2필	36,986.00	11,240,202	
건 물	14동	14,147.45	7,856,900	
충주의료원	15건	24,765.38	7,335,770	
토 지	8필	15,347.00	3,344,930	
건 물	7동	9,418.38	3,990,840	

나. 무상사용 허가 계산 목록 : 별첨과 같음

4. 관계법령 : 별첨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 제2항 제6호

공 계 법 령

< 지방계정법시행령 >

제82조(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) 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·매각·교환·양여·신탁 또는 대물 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,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'99. 1.21>

1.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

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3조(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) ① 잡종재산은 이를 대부·매각·교환·양여·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,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. <개정 '99. 1. 21>

제85조(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) ① 법 제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·수익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88조의 규정을, 당해 허가의 취소와 그 취소로 인한 손해보상에 관하여는 제94조 및 제10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. <개정 2000.10.20>

제88조(잡종재산의 대부) ②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. <개정 '94.9.29, '99.4.30, 2000.10.20>

6.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